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한화진 (환경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」 제정(법률 제19155호, 2023.1.3. 제정, 2023.7.1. 시행)으로 경상북도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,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연료사용 제한 규제 대상 지역에 해당되는 대구광역시에서 군위군 지역을 제외하여 기존 제도 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저황유의 공급·사용지역 중 황함유량 0.3% 이하 중유 공급·사용지역에 해당되는 대구광역시에서 군위군을 제외(안 별표 10의2)
- 나.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에 해당되는 대구광역시에서 군위군을 제외(안 별표 11의2)
- 다. 청정연료 사용 대상지역에 해당되는 대구광역시에서 군위군을 제외(안 별표 11의3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대구광역시 및 군위군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2) 행정규제 :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0의2 제1호나목1)의 특별자치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특별자치시 및 광역시	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, 대구광역시 군위군
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

별표 10의2 제1호나목2)의 특별시 및 광역시의 공급·사용지역란 중 “대구광역시”를 “대구광역시(군위군은 제외한다)”로 하고, 같은 2) 충남의 공급·사용지역란 중 “당진군”을 “당진시”로 한다.

별표 11의2 제1호 중 “대구광역시”를 “대구광역시(군위군은 제외한다)”로 한다.

별표 11의3 제2호가목1)의 대구권의 대상지역란 중 “대구광역시”를 “대구광역시(군위군은 제외한다)”로 하고, 같은 목 2)의 대구권의 대상지역란 중 “대구광역시”를 “대구광역시(군위군은 제외한다)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환경부 대기관리과	
연 락 처	(044) 201 - 6907